

의용소방대원의 복장 (제14조제1항 관련)

1. 복장의 종류

구분	종류
1. 제복	☐ 정복 ☐ 기동복(활동에 편한 옷) ☐ 방한복 ☐ 조끼 ☐ 활동복 ☐ 우천활동복
2. 모자	☐ 정모 ☐ 기동모
3. 부착물	☐ 직위표장 ☐ 모자표장[정장(正章: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 등), 약장(略章: 약식의 훈장, 휘장, 문장 등)] ☐ 지휘장(정복) ☐ 소매표장 ☐ 배지 ☐ 직위표 ☐ 가슴표장 ☐ 기장(정복)
4. 부속물	☐ 셔츠·넥타이 및 넥타이핀(정복) ☐ 금장단추(정복) ☐ 허리띠 및 버클 ☐ 이름표 ☐ 등판표시 ☐ 깃표장
5. 신발	☐ 단화 ☐ 기동화

※ 비고: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2.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

종류			수량	사용 기간	지급대상	비고
제 복	정복	동복	1	6년	대장, 지역대장	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.
		하복	1	6년	대장, 지역대장	
	기동복	동복	1	3년	의용소방대원	
		하복	1	3년	의용소방대원	
	조끼		1	3년	의용소방대원	
	방한복		1	6년	의용소방대원	
	활동복		1	3년	의용소방대원	
	우천활동복		1	3년	의용소방대원	
모 자	정모		1	6년	대장, 지역대장	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.
	기동모		1	3년	의용소방대원	
신 발	단화		1	3년	의용소방대원	
	기동화		1	3년	의용소방대원	

※ 비고

1.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제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2.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3.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과 정모를 지급할 수 있다.